

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길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467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2월 09일
발 의 자: 김길영 의원(1명)
찬 성 자: 김영옥,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윤기섭, 윤종복, 이상욱,
이성배, 이효원, 임춘대,
정지웅, 최민규, 허 훈,
홍국표 의원(19명)

1. 제안이유

- 제6조는 동일한 법정 개념을 규정하면서도 “조명환경관리구역”과 “조명환경 관리지역”을 혼용하고 있어 상위법인 인공조명에 의한 빗공해 방지법 에 따라 이에 조례 전반의 용어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통일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상위법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 또한 제24조제1항은 점등·소등시간의 통합·개별관리 주체가 본문에 명시되지 않고 단서에만 ‘관리청’이 등장하여 권한·의무의 귀속이 불명확하므로, 운영주체를 ‘관리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단서의 조정권 규정도 본문 주체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가. 제6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조명환경 관리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하고, “관리지역”을 “관리구역”으로 정비하여 용어를 일괄 통일함

나. 제24조제1항의 점등·소등 시간 운영(통합관리 또는 개별관리)의 행위주체를 ‘관리청’으로 명시하고 이에 “관리청”의 정의를 제2조제6호에 신설하여 기상 상황 등 안전상 필요에 따른 점등·소등시간 조정 권한을 같은 주체(관리청)로 일관되게 규정하도록 문장구조를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관리청”이란 도로조명, 주택가 보안등, 공원등 등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명설비를 설치·관리할 권한을 가진 시장, 자치구청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명환경 관리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명환경 관리지역의 지정목적”을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목적”으로, “조명환경 관리지역을”을 “조명환경관리구역을”로, “조명환경 관리지역의 지정을”을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지역의”를 “관리구역의”로, “관리지역별”을 “관리구역별”로 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중 “도로조명”을 “관리청은 도로조명”으로, “개별관리”를 “개별관리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관리청은 안개”를 “안개”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조명환경 관리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신설></p>	<p>제2조(정의)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관리청</u>”이란 도로조명, 주택가 보안등, 공원등 등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명설비를 설치·관리할 권한을 가진 시장, 자치구청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p>
<p>제6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p> <p>① 시장은 빛공해를 방지하고 도시조명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u>조명환경 관리지역</u>을 지정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u>조명환경 관리지역</u>의 지정목적이 상실되거나 <u>조명환경 관리지역</u>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조명환경 관리지역</u>의 <u>지정</u>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p> <p>③ 제1항 각 호의 <u>관리지역</u>의 지정에 대한 세부기준, <u>관리지</u></p>	<p>제6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p> <p>① ----- ----- ----- <u>조명환경관리구역</u>-----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 <u>조명환경관리구역</u>의 지정목적----- ----- <u>조명환경관리구역</u>을 ----- ----- ----- <u>조명환경관리구역</u>의 <u>지정</u>을 ----- -----.</p> <p>③ ----- <u>관리구역</u>의 ----- ----- <u>관리구역</u></p>

역별 상향광속률, 건물표면회
도, 빛방사 허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점등 및 소등 운영) ① 도
로조명, 주택가 보안등, 공원등
의 공간조명 점등 시간은 일몰
15분 후로 하고 소등 시간은 일
출 15분 전으로 통합관리 또는
개별관리 한다. 다만 관리청은
안개, 강우 등 기상 상황의 변화
로 인해 시민의 안전에 위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점등 및 소등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26조(조명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명설비 및 야간
경관을 개선·정비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조명환경 관리지역 중 자연
환경과 주거환경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는 조명기구를 개선
·정비하는 경우

2. 3. (생략)

② (생략)

별 -----

-----.

제24조(점등 및 소등 운영) ① 관
리청은 도로조명-----

개별관리하여야 ---. --- 안개,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조명지원사업) ① -----

-----.

1. 조명환경관리구역 -----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상 “조명환경관리구역”과 “조명환경 관리지역”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 조례 용어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통일하며, 제2조제6호에 “관리청”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24조제1항의 점등·소등 시간 운영(통합관리 또는 개별관리)의 행위주체를 “관리청”으로 명시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한 바, 이는 자구수정 등 조문정비에 해당하여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김 경 명

☎ 02-2180-7954

e-mail : kimkmi0809@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